

의안번호	2219290
의 퇴 인	이기현 의원
회 답 일	2026. 7. 1.
추계번호	26F2749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신청 한도 인상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3조의2제5항(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)	○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의 한도를 인상 －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 신청대상: 다음의 ①, ②를 모두 갖춘 납세자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 ※ 금융재산: 금전,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부금·계금·출자금·특정금전신탁·보험금 공제금 및 어음 － 물납신청 한도: (현행) 물납대상인 문화유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→ (개정안) ①, ② 중 큰 금액 ① 물납 문화유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② 상속세 납부세액의 30%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3조의2제5항(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신청의 한도가 인상되는 경우, 물납을 신청한 납부세액 외의 상속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73조의2제5항)

- 상속세의 물납대상인 재산은 기존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, 유가증권(국공채, 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) 등이었으나,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이 포함
 - 상속세 물납대상인 문화유산 등의 범위:
 - ①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
 - ②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
 - ③ 회화, 판화, 조각, 공예, 서예 등 미술품
 - 문화유산 등을 물납신청할 수 있는 상속인: 다음 ①,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자
 - 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
 -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
 - ※ 금융재산: 금전,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·적금·부금·계금·출자금·특정 금전신탁·보험금·공제금 및 어음
- 개정안에 따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신청 한도를 인상하는 경우, 국가가 물납된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상속세수가 감소할 수 있음
 - 물납신청 한도: (현행) 물납대상인 문화유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→ (개정안) 다음 ①, ② 중 큰 금액
 - ① 물납대상인 문화유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
 - ② 상속세 납부세액의 30%
 - 개정안에 따라 문화유산 등에 물납을 신청한 상속인 중 상속세 납부세액의 30%가 물납대상인 문화유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, 물납 이외에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감소할 수 있음
 - ※ 국가에 물납된 문화유산 등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가정
-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물납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유산 등의 재산가액,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시점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속의 대상으로 물납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재산가액,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재산수준, 연령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 물납은 2022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건에 사례만 발생

하는 등, 향후 문화유산을 통한 상속세 물납건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※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, 문화유산 등에 대한

상속세 물납은 2024년 1건(납부세액 26.0억원) 발생¹⁾

- 국가유산청의 2025년말 기준 국가유산관리현황에 따르면, 개인이 소유한 문화유산은 2,186건으로 집계되나, 해당 문화유산의 재산가액 및 소유자의 재산현황, 연령, 가족 구성 등 향후 상속시점 및 상속세액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

[표 1] 소유자별 국가유산 현황: 2025년말 기준

(단위: 건)

	계	국가	지방자치단체	공공기관	개인	법인/단체	혼합	기타
합계	14,926	2,055	2,054	162	2,186	7,285	1,116	68
국가지정등록유산	5,279	1,416	447	116	674	1,822	738	66
시도지정등록유산	6,703	484	1,269	41	954	3,641	312	2
문화자연유산자료	2,944	155	338	5	558	1,822	66	-

주: 1. 국가유산 현황에서 국가무형유산 및 시도무형유산을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

2. 기타는 특정 동물 중(천연기념물)과 같이 소유자가 없는 등의 경우를 포함

자료: 국가유산청, 국가유산현황, 2026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

1) 2024년 당시 이만익의 “일출도” 등 총 4점의 미술품이 상속세로 물납되었으며,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(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, “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,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허가”, 2024.10.8.)